**2020학년도 제2학기**

**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청 및 심사 진행 안내**

1. 외부심사위원 제청 서류제출
	1. **제출대상: 이번 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자 중 박사(석‧박사통합)과정**

 ※석사과정은 외부심사위원 제청 의무 없음

* 1. 대학원 학칙 제34조(학위논문 심사)에 의거하여 박사(석‧박사통합)과정 심사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며, 외부심사위원(타교 전임교원 또는 전문인사) 1인 또는 2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.
	2. **제출기간: 2020.10.16(금)~2020.10.21(화) 17시까지**
	3. **제출서류: (박사과정)학위청구논문 외부(초빙)심사위원 자격 확인서**
	4. **제출방법**
		1. 외부심사위원을 심사신청자가 섭외한 경우: 아래 표 심사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제출서류를 소속 학과(전공)사무실 제출
		2. 외부심사위원을 소속 학과(전공)에서 섭외한 경우: 제출서류를 소속 학과(전공)에서 준비하므로 심사신청자가 제출할 서류 없음
		3. 서식 다운로드: <http://www.smu.ac.kr/grad/board/format.do?mode=view&articleNo=711647>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구분** | **심사위원 자격** | **제출서류** |
| 1 | 국내‧외 대학의 전임교원(명예, 초빙, 석좌, 겸임 포함) | 학위청구논문 외부(초빙)심사위원 자격 확인서,해당 대학의 재직 증명서 |
| 2 |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강의경력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경력(전임연구원)이 통산 3년 이상인 자 | 학위청구논문 외부(초빙)심사위원 자격 확인서,경력증명서 및 박사학위증 사본(또는 박사학위(졸업)증명서) |
| 3 | 위 “심사위원 자격”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리 대학에 강의, 논문지도교수,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경력이 있는 자 | 학위청구논문 외부(초빙)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|

1. 심사위원 제청 결과확인
	1. **확인기간: 2020.11.09(월) 10시부터**
	2. 확인사항
		1. 확인경로: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→통합정보→학생기본→졸업→논문(대체)심사신청
		2. 논문(대체)심사신청메뉴에서 아래 항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		3. ①학위청구 논문 예비심사 위원 명단 확인: 석사과정 3인, 박사(석‧박사통합) 5인

 ※예비심사 위원이 본심사도 심사합니다.

* + 1. ②예심일자 및 예심장소, 본심일자 및 본심장소 확인하여 심사받을 준비를 하고, 심사위원에 배부할 학위청구논문 예심 및 본심사 보고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예비심사에서 서식을 심사위원장용과 심사위원용을 구분하여 배부하여야 합니다.

 ‣서식 다운로드: [www.smu.ac.kr/grad/board/format.do?mode=view&articleNo=710810](https://www.smu.ac.kr/grad/board/format.do?mode=view&articleNo=710810&article.offset=0&articleLimit=10)

* + 1. 심사위원 명단, 예심‧본심 일자 및 장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속 학과(전공)사무실 문의하여야 함.

1. 심사경비 납부결과 확인
	1. 납부기간: 2020.10.16(금) 14시 ~ 10.20(화) 23시까지
	2. 납부방법: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→통합정보→학생기본→졸업→논문(대체)심사신청에서 부여된 ③총납입금액을 우리은행 가상계좌 납부
	3. **확인기간: 2020.10.21(수) 10시부터**
	4. 확인사항
		1. 확인경로: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→통합정보→학생기본→졸업→논문(대체)심사신청
		2. 논문(대체)심사신청메뉴에서 ④“납입일자”가 출력되면 납부가 확인된 것입니다.
2. 비대면 방식 학위청구논문 지도 및 심사 허용
	1. 비대면 활용방법 예시

|  |  |
| --- | --- |
| **구분** | **비대면 방식 예시** |
| 학위청구논문 지도 | 이메일, 전화, SNS(카카오톡, 위챗 등), 구글 행아웃, Webex, ZOOM화상회의 커뮤니케이션 등 |
| 학위청구논문 심사 | 구글 행아웃, Webex, ZOOM화상회의 커뮤니케이션 등 |

* 1. 대면 방식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: 코로나-19 대응 보건안전 수칙 준수하여야 함.

 1) 상호 간 2m 이상 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.

 2)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.

 3) 참석자 전원 손 소독하여야 합니다(비누로 30초 손 씻기 또는 손 세정제 사용).

1.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 일정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기간** | **내용** | **비고** |
| **2020.10.12(월)~10.15(목)** | **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**※논문심사비, 논문지도비(수료자), 연구등록비(수료자)를 입금하여야 논문심사 신청이 완료됨. | 신청자 |
| **2020.10.16(금)~10.22(목)** | **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학과 승인 및 심사위원 제청****※외부심사위원에 관해서는 자격 확인서 제출** | **학과** |
| 2020.10.29(목)~11.06(금) |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대학원위원회 선정 심의 | 대학원교학팀 |
| 대학원위원회 심의결과 학과 통보(특이사항 있을 시) |
| **2020.11.09(월)~12.04(금)**  | **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시행** | 학과 |
| 2020.11.30(월)~12.10(목)  |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제출 | 학과 |
| 2021.01.05(화)~01.13(수)  | 심사 합격자 학위청구논문 완제본 제출 | 합격자 |

 **※논문심사위원 제청이 짧은 기간 내 진행되어야 하므로 신청자와 해당 학과는 심사신청 즉시 지도교수와 함께 심사위원 섭외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**

 **※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(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)에 의거하여 반드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2020.10.16(금) 이후 심사신청 추가는 대학원위원회 일정 연기가 불가능하여 승인할 수 없으므로 이번 학기에 심사 신청하고자 한다면 2020.10.12(월)~2020.10.15(목) 심사신청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**

1. 관련 규정
	1. 고등교육법 시행령

제44조(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) ①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.

②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**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(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이상,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)이 행한다.**

* 1. 대학원 학칙

제33조(지도교수) ①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(교육중점트랙 제외)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우리 대학교 비전임교원, 타교 전임교원 및 전문인사로서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 경력자가 논문지도를 하고자 할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,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.

③생략

④생략

⑤지도교수는 학생이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 만약, 지도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지도교수는 2년간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34조(학위논문 심사) ①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은 (논문)지도교수와 동일하며,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이 제청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(석사 3인, 박사 5인)으로 구성한다. 단, **공동으로 논문을 지도하는 경우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지도교수 인원은 심사위원 총원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**

**②박사과정 심사 시 타교 전임교원 또는 전문인사 1~2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.**

③학위논문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이루어지며,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심사를 받을 수 없다.

④심사의 통과는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2/3 이상의 찬성,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4/5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* 1.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

제49조(심사위원 제청) **①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은 소정기간 내에 심사신청자의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선정한 후 그 명단을 대학원위원회에 제청하여야 한다.** 이때 학칙 제34조 1항 및 2항에 따른다.

**②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배제한 전임교원(교육중점트랙 제외)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**

③삭제

④예비심사와 본심사의 심사위원은 동일하다.

붙임 1. 학위청구논문 외부(초빙)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서식 1부.

 2.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서식 심사위원장용 및 심사위원용 각 1부.

 3. 대학원 학과(전공)사무실 전화번호부 1부. 끝.

**2020.10.**

**대학원장**

**교육대학원장**

**상담대학원장**

**경영대학원장**

**문화기술대학원장**

**예술디자인대학원장**